6.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

[제1조] 목적

이 규정은 제1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조직,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2조] 기능

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,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- ② 고시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④ 업무 집행의 조정, 지도,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3조] 조직

-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, 대한소아신 경학회 회원 중 4-6명의 위원을 선정한다.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.
-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,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.

[제4조] 회의

-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
[제5조] 소위원회

-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제6조] 재정

- 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신경학회는 회비와 특별 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
-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
[제7조] 행정요원

- 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 원을 둘 수 있다.
- ② 행정요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